



2010년도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 「토대기초연구지원」신청요강

2010. 1.

교육과학기술부한 국연구재단



주요사항 신구대비표

구분	2009년	2010년	비고
1. 지원예산	① 총예산: 21,360백만원(67과제) ② 신규: 6,977백만원(25과제) ③ 계속: 14,383백만원(42과제)	① 총예산: 19,982백만원(53과제 내외) ② 신규: 4,826백만원(16과제 내외) ③ 계속: 15,156백만원(47과제 내외)	
2. 지원분야	① 인문.사회 전 분야(예술체육학 포함)	① 좌동	
3. 지원규모 (연/과제당)	① 연간 500백만원 이내	① 연간 300백만원 이내	
4. 지원기간	① 5년이내(3+2) -3억이상연구과제 연구소요경비등 심사 강화	① 5년이내(3+2) -2억이상연구과제 연구소요경비등 심사 강화	
5. 연구진 구성조건	 전임인력: 최소 2명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신분 일반공동연구원/전임연구인력 행정요원: 연간 1.3억원 초과과제는 1인 이상 전담배치 	 좌동 좌동 폐지 	
6. 심사관리	① 요건심사→전공심사(패널)→ 종합심사	① 요건심사→전공심사(패널)→ 면담심사→종합심사	
7. 추진일정	 신규 과제 2월 공고/4~6월 심사/7월 지원 계속 과제 4~12월 연차보고서 접수, 연차 점검(4회 시행) 	 신규 과제 1월 공고/7~8월 심사/9월 지원 계속 과제 4~6월 연차보고서 접수, 연차점검 	
8. 기타(사후)	① 다년과제 중 연간 3억원이상 과제 연차점검 시 현장평가 병행	① 좌동	

차례

I. 시업목적 및 지원방향
■ 사업목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지원방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지원내용
■ 지원예산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지원분야 및 대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지원유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지원형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지원규모 및 기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연구개시일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Ⅲ. 신청방법
■ 신청자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신청기간 및 방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신청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신청 및 참여제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IV. 심시단계 및 절차
■ 심사단계 ······8
■ 심사절차 및 내용·············8
■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V. 연구비 지급 및 관리
■ 연구비 지급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연구비 관리·······10
VI. 연구과제 사후관리
● 연차평가대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단계평가대상·······12
● 연구결과보고 및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VII. JIEIVIS
■ 간접비 지급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기타 참고사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[붙임 1] 2010년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
[붙임 2] 연구계획서 양식 ···········19

Ⅰ. 시업목적 및 지원방향

→ 사업목적

- 인문사회분야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지식생산기반을 구축 하고, 이를 통하여 국가경제·사회발전에 기여
- 학술연구의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하며, 대학사회의 연구경쟁력을 강화

❷ 지원방향

-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의 사회적 적실성 강화
 -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연구기반 조성
 - 사업의 효율성과 관리의 명확성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
- 학술연구와 연계한 우수인력 양성
 -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제공
- 우수기초 성과물 홍보 및 성과확산
 - 창의적 우수성과물 발굴 강화 및 기초연구의 저변확대

Ⅱ. 지원내용

❷ 지원예산

○ 지원비 : 총 19,982백만원(63과제 내외)

- 신규지원 : 4,826백만원(16과제 내외)

- 계속지원 : 15,156백만원(47과제 내외)

→ 지원분야 및 대상

○ 지원분야 : 인문사회 전 분야(예술·체육학 포함)

○ 지원대상 :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해당자

❷ 지원유형 : 일반과제 또는 번역과제

○ 지원영역 : 동서양 고전 주해·해설 / 학술전문·인명사전 편찬 / 사회 기초 자료 조사 및 통계 / 당대사 자료 수집 정리 / 역사·민속 지리지, 역사·문화지도편찬 / 희귀언어연구/기타 토대연구

※ 번역과제의 경우 출판비 별도 지원 없음

❷ 지원형태

○ 공동연구 :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

※ 연구보조원 참여

- : 학사과정생 및 학사급연구원,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연구원, 박사과정생 등으로 공동연구에 참여가능, 연구책임자 책임 아래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함
- : 협약 당시 자격을 연구 종료시까지 인정함(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시에도 보조원 인정)

⊘ 지원규모 및 기간

○ 지원규모 : 연간 300백만원 이내

※ 2억원 이상 연구과제: 연구소요경비 등에 대한 심사 강화

○ 지원기간 : 5년이내(3+2)

❷ 연구개시일 : 2010. 9. 1.

Ⅲ. 신청방법

● 신청자격

- 『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』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하며, 연구책임자 는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
 - ※ 200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미감일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, 국제학술지(SCI&SCIE, SSCI, A&HCI, SCOPUS) 게재논문,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함
 - 단독자서 및 역사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자서 및 역사는 연구실적 1편으로 신정함
 - 단,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

※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

- 제 5 조 (지급대상)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국내외의 대학(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)또는 그 소속교원
 - 2.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·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자
 - 3. 「대한민국학술원법」제13조 및 「대한민국예술원법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·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·예술가 또는 그 단체
 - 4. 대학의 시간강사
 - 5.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
 - 6.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

ㅇ 연구자 참여자격

	구분	참여자격	
연·	구책임자	- 연구업적 3 편 이상	
	일반공동연구원	- 연구합적 3천 이경	
공동연구원	전임연구인력 (박사급연구원)	- 박사학위 소지자	

- ※ 토대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의 대학 소속 이외의 전문가(연구소, 문회원, 박물관, 향교, 서원, 서당 등)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격을 조정함 (온라인 신청 시 소명내용 및 해당분야에 대한 경력사항 입력)
 - 전임연구인력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가 참여 가능 (동등이상의 전문가 참여는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동등이상 자격 검토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함)
 - 일반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 특수 영역의 경우 연구업적에 상응하는 조시보고서 또는 활동실적도 인정할 수 있음
 - ※ 전임연구인력이 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업적 3편이 필요함

○ 연구진 구성조건

- 전임연구인력은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(Full-Time)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
-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,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

-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2천7백만원(퇴직금 포함)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수당의 최대 9%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(기관지원분)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
- 전임연구인력 1인당 4.95㎡(1.5평)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

→ 신청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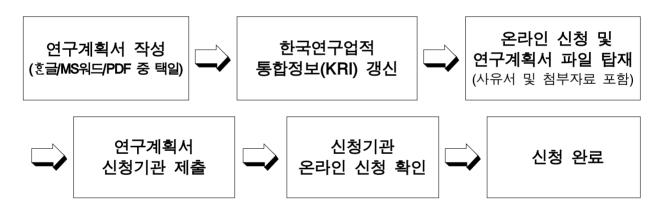
ㅇ 공동연구

- 연구자 신청 : 2010. 6. 14.(월), 09:00 ~ 6. 18.(금), 18:00까지

- 기 관 확 인 : 2010. 6. 21.(월), 09:00 ~ 6. 22.(화),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● 신청절차 (온라인 신청절차)



가. 온라인 신청 전

- 1) 재단 홈페이지 「연구기반정보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(KRI)」에서 본인의 정보(연구업적 등)를 입력, 수정하여야 함(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.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 하여야 함)
- 2)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(학회 등) 회원자격 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.

- 3)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4) "연구장비"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(구입 년도, 기기명, 기기사양, 보유수량)을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

나. 온라인 신청

- 1)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"온라인 신청 사항"을 입력하고, "연구계획서"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, 접 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
 - ※ <u>단</u>, 동서양 번역·주해·해설과제의 경우 "번역대상도서의 원문사본 및 번역 원고(목차포함, A4 20매 이내)"를 항글, MS-워드 또는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구계획서와는 별도로 탑재함 (**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**)
- 2)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모두(연구보조원 제외) 각자의 업적 중 "3쪽 신청자격"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3편을 대표업적으로 선택하여야함. 단,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,SCI&SCIE, SSCI,A&HCI, SCOPUS 등의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함
- 3)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"3쪽 신청자격"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연구실적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또는 활동 실적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
- 4) "연구장비"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(기기명, 기기사양, 구입년도, 보유수량) 및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
- 5)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,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(비 치장소 포함)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

- 6)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 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·수정이 불가능함
- 7)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,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

다. 온라인 신청 후

- 1) 연구자
-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(계획서 포함)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
- 2)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
- 신청기관(연구책임자 소속기관)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(계획서, 업적요약문 포함) 1부를 제출받고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,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
-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기간
 - · 2010. 6. 21.(월), 09:00 ~ 6. 22.(화), 18:00까지
-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(계획서 포함)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

❷ 신청 및 참여제한

가.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

-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 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

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(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 내)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해 5년간 참여 제한
- ※ 2009년 이전 선정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 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를 제한
- 대학·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 (학회 등)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』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(범위 및 기간 등)에 따라 신청제한
 -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. 단,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. 12. 31. 이전인 경우 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 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

나.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

-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,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.
- · 이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, 차후에 접수 받는 사업에는 신청 제한되며, 이 후 연구과제는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.
-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. 12. 31.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
-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,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(지원기간)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
 - *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. 즉, 신청한 과제(연구자)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
 - *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 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

Ⅳ. 심시단계 및 절차

❷ 심사단계

단계별	심시구분	심사내용	비고
1 단계	요건심사	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	한국연구재단
2 단계	패널심사 면담심사	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	전공심사단
3 단계	종합심사	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,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	종합심사단

❷ 심사절차 및 내용

가. 제 1 단계 : 요건심사

- 심사방법 :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

- 심사내용 :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

나. 제 2 단계 : 전공심사

- 심사주관 : 전공심사단

- 심사방법 : 패널심사 + 면담심사

- 심사내용 :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

- 심사항목 및 배점
- · 토대연구-일반과제

구분	심사항목	심사내용	비고
문자서 연구주제 및		■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	
독창성 (40)	방법의 독창성	■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/증진시키는가	
(,	(40)	■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	
	연구내용 및	■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	
	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	■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	
	(15)	■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접근방법인가	
		■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	
A 01.11	실행계획의	■ 중요 선행연구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	
수월성 (40)	구체성 (15)	■ 자료의 수집·분석·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	
(40)		■ 연구규모(연구비 및 연구기간) 및 연구진 구성이 적정한가	
		■ 제시된 연구목표(연구결과 등)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	
	연구유형의 적정성 (10)	■ 연구주제와 내용이 공동연구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	
		보하고 있는가	
		■ 연구주제와 내용이 후속 및 심화연구로의 확대 등 토대연구로서	
	(10)	의 가치가 기대되는가	
연구	학문적 전문성	■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	
역량 (10)	및 관련 업적 (10)	■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있는가(질적 수준 포함)	
기대	학문발전	■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	
효과	기여도 및	■ 각 학문분야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	
(10)	학문적 파급효과 (10)	•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	

· 토대연구-번역과제

심 사 항 목	심사내용	비고	
번역업적의 수준(30)	• 번역참여자의 업적실적 수준(30)		
버여스헤느려/20\	• 번역참여자의 번역능력(15)		
번역수행능력(30) 	• 번역연구진 구성의 적절성(15)		
버여무저(20)	 번역의 필요성(15) 		
번역목적(30) 	• 번역의 차별성 (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)(15)		
비여겨기이 하으(40)	• 번역결과의 학문적, 사회적 기여도(5)		
번역결과의 활용(10)	• 번역결과의 교육현장에의 활용방안(5)		
계			

※ 상기 심사항목 및 내용은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다. 제 3 단계 : 종합심사

- 심사주관 : 종합심사단

- 심사내용

·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

ㆍ지원예산 및 선정기준결정 등

※ 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

●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

가. 예비선정 :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

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

나. 최종선정 :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

다. 협약체결: 재단(이사장), 주관연구기관(장),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

♡. 연구비 지급 및 관리

❷ 연구비 지급

가. 지급방법

-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(주관연구기관장)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
 - ※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
- 나. 지급시기 :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
 - ※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점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
- ❷ 연구비 관리
 - 본 사업은「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」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,
 - 동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,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 (또는 주관연구기관장)이 중앙관리하여야 함

Ⅵ. 연구과제 사후관리

● 연차평가대상

가. 연차보고서 접수 및 평가

- 접수시기 : 연차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

- 접수방법 : 연차보고서(한국연구재단 소정양식) 온라인 탑재

- 평가시기 : 연차보고서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

- 평가방법

구분	심사구분	내 용	주 관
1단계	전공심사	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	PM (필요시 외부전문가)
2단계	종합심사	1단계 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	종합심사단

- 평가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심사내용	비고
기수행 연구 실적	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(40)	
(80)	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(40)	
그는 시크리티 네스	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(5)	
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(20)	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(10)	
(20)	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(5)	

- ※ Pass/Fail로 평가하며, 공통사항을 준용
- 평가결과 반영
-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및 차년도 연구지원비 조정

나. 2010년 계속과제 연차평가 대상과제

- 점검대상

구분	'08년 선정 3년차	'09년 선정 2년차	계
과제수	23과제	24과제	47과제

● 단계평가대상

- 단계평가 방법 : 단계보고서 접수 후 평가

- 단계보고서 접수

· 단계보고서 접수 대상 : 2010년도 계속지원 결정된 4년 및 5년 결정과제 중 3년

차 진입과제

· 단계보고서 접수 시기 : 3년차 연구 시작 후 10개월 이내

· 접수방법 : 온라인 제출

· 접수서류 : 단계보고서(한국연구재단 소정양식 온라인 탑재)

- 단계평가

·점검시기 : 단계보고서 접수 후 차단계 연구개시 전

• 평가방법

단계별	심사	구분	심사내용	비고
1단계	현장	실사	연구비 집행에 대한 적절성 및 연구 협약 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(정량자 료 조사 병행)	
2단계	전공 심사	패널 심사 면담 심사	3차년도까지의 연구추진 실적 및 향후 사 업계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	전공심사단
3단계	종합심사		1단계 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	종합심사단

- 평가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심사내용	비고
기수행 연구 실적	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(40)	
(80)	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(40)	
	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(5)	
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(20)	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(10)	
. ,	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(5)	

- 평가결과 반영
- ·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차년도 연구지원비 조정
- · 우수성과 연구과제 사례 및 발표
- ※ 연구과제 지원중단 및 연구비 조정과제의 예산을 조정하여 단계평가결과 우수성과과제에 대한 연구비 증액(인센티브 별도) 등의 검토 가능
 - ※ 평가결과 이후, 연구진은 차년도 계획서인 '4차년도 연구계획서'를 작성· 제출하여야 하며, $3\sim5$ 차년도 종합연구계획서도 별도로 수정(반영여부 등을 대조표로 기록)하여 제출
- ·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연구계획서 수정 및 제출
- ※ 평가결과(결정, 권고, 개선으로 평가)
- 결정 : 평가결과가 '결정'으로 나타난 연구과제는 반드시 차년도 계획서를 결

정사항에 맞춰 수정하여 제출

○권고 : 패널진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

○ 개선 : 개선 지적사항의 경우,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차년도 계획서에

개선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열거

연구결과보고 및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

가. 연구결과보고서 제출

1)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
2)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

3) 제출자료

- 온라인 입력

• 연구결과 개요보고서

•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: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함

· 연구요약문(국·영문)

※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

- 파일 탑재
- 연구결과 보고서
- ※ 일반과제: (자유형식, 원문파일 탑재)
- ※ 번역과제: (자료집 또는 저서, 번역서 탑재)
 - *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, 음성자료,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,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
- ·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의 Working paper 형태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www.nrf.go.kr)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함
 - *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 (예: 허위 및 표절 등)에 해당하는 경우,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

나.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

-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(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(SCI&SCIE, SSCI, A&HCI, SCOPUS) 학술지)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
 - ※ SCOPUS급 학술지 2010년 추가

구분	단년과제	다년과제	비고
단독연구	1편 이상	2편 이상	* 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
공동연구	2편	이상	2편,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

- ※ 연구참여자(보조원 제외)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
- ※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
- ※ 공동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의무도 승계하는 것으로 최종 참여자가 최종결과물을 제출함

-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: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
 - ※ 일반과제로 신청한 경우: (게재논문 또는 저서)
 - ※ 번역과제로 신청한 경우: (자료집 또는 저서, 번역서)
- 다. 최종 연구결과물 사사표기 :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
 - 국문표기 : "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(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)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(NRF-2010-322-과제번호)."
 - 영문표기 : "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(NRF-2010-322-과제번호)."

라. 연구결과보고 및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

- 연구결과 및 최종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「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처리규정」제29조 2항 및 제31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
- 연구결과보고 미이행 :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환수일로부터 2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
- ·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미이행 :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. 단, 제한 기간 중 결과물 제출 시 제한 해제

마. 연구성과 관리

- 연구성과 Follow-up: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(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, 각종 언론보도 내용, 인력양성 실적 등) 및 연구성과물(논문, 저서, 각종 보고서, 특허, 기술발명, 원자료, 중간산출물)을 탑재하여야 하며,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

- ※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·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
 -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·참고한 일체의 자료 (단,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)
 -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(예: 사진자료, 음성자료, 동영상자료, 통계자료 등)
- 한국연구재단은「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」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

Ⅷ. 기타//항

❷ 간접비 지급

○ 간접비는 당해연도 적용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, 계속과제의 경우 선정 년도의 적용고시율을 적용

❷ 기타 참고사항

-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"연구분야 분류표"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
-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
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」에 의거, 신청자(연구책임자)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. 단,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
- 「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」에 의거,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,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 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,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

문 의 처

□ 한국연구재단(www.nrf.go.kr)

○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

- 인문사회연구지원팀 김용숙 : 042-869-6309

○ 전공심사 관련 문의

어문학단 : 042-869-6391~3
역사철학단 : 042-869-6245~6
법정상경단 : 042-869-6301~2
사회과학단 : 042-869-6083~5

- 문화융복합단: 042-869-6136~8, (예술체육.융복합분야)

○ **전산 관련 문의**(온라인신청, 연구업적통합정보, 전산장애)

- 정보팀 Help Desk: 042-869-6114

【붙임1】 2010년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

비목	세목	사용 용도	계상 기준
인건비	인건비	1. 연구보조원 수당 : 연구에 참여하는 (전문)학 사과정,석사과정,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* 개인별 총액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 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	-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: 월 100만원이내
			*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,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"별표2"를 준용할 수 있음
		관지원분)를 산정할 수 있음	*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- 단독연구 : 박사급연구원(월 170만원 / 1인당)
	연구 장비 · 재료비	1. 각종 재료 및 시약,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, 분석료,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.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와 부수기자재, 연구시설의 설치· 구입·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	
직접비	연구 활동비	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·제세공과금 및 수수료, 사무용품비 등 3. 전문가활용, 국내·외 교육훈련, 국내외 정보 D/B 네트워크사용료, (해외)기술정보수집비기술정보수집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비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윤문교열비, 번역감수,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, 특허정보조사비 등 4.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	 여비는 인원,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,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(다과비 등)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회의일시, 장소,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, 도서명,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・관리하여야 함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 가능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,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,
	연구 수당	○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* 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	- 연구책임자, 일반공동연구원 : 1인 연300만원이내

【붙임 2】**연구계획서 양식**

연구기간	선택
1년 과제	
2년 과제	
3년 과제	
4년 과제	
5년 과제	

연 구 계 획 서

<2010년도 토대기초연구과제지원)>

지원유형	* 과제의 지원유형을 (일반과제 및 번역과제)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십시오.				
	연구기간		년	2010. 9. 1 ~	
	신 청 연 구 비	1차년도	천원	참여인원 (연구보조원 제외)	총 명 (전임연구인력: 명)
		2차년도	천원		
연구규모		3차년도	천원		
		4차년도	천원		
		5차년도	천원		
		계	천원		
여기리레다	국 문				
연구과제명	(영 문			

I. 연구계획

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.

- ※ 연구계획은 "심사항목 및 측정지표"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, 방법 및 내용, 학문발전 공헌도, 결과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함
 - ("목차"를 반드시 포함함-[총괄 앞장]과 [Ⅰ.연구계획] 사이에 "목차" 배치)
- ※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
- ※ 연구계획서(연구계획, 참고문헌 목록, 연구추진계획,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) 용량은 10Mb (또는 A4 용지 30매 내외)이내를 원칙으로 함. 단 참고문헌은 30 매에 포함되지 않음
 - ※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, 반드시 쪽수(page)를 기재
- ※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(Blind Review)로 진행됨.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,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.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 단,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표기를 삭제할 필요가 없음

1. 연구의 목적

(연구의 필요성, 연구주제의 독창성,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)

2. 연구방법 및 내용

(다년과제는 연차별 연구계획을 각각 기술)

3. 결과 활용방안

(연구결과의 학문적·사회적 기여도, 인력양성 방안,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)

4. 기타사항

(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의 필요성 및 연구비 집행계획 등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)

5. 참고문헌

Ⅱ. 연구추진계획

1.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

(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,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)

2. 연구수행일정

(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) < 예시 >

1차년도		
1차년도 과제목표		
기 간 (추진년월)	내 용	비고

※ 다년과제의 경우 2차, 3차, 4차, 5차년도 일정도 동일하게 작성

3.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

(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계획을 기술)

☞ 향후 연구수행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므로 공동연구원별로 실질적인 역할분담내역 및 연구수행계획을 기술함. 연구책임자도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, 관리의 기능만 담당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.

< 예시 >

참여형태 구분		참여자 구분	연구역할분담내용	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
연구책임자		갑		
	일반공동 연구원	갑		
공동 연구원		皇		
		병		
	전임연구 인력	갑		
		皇		
		병		

4. 연구비 규모

(연구진 구성의 적정성,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 등 기술)

5.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

Ⅲ. 대표업적

신청과제	연구책임자 ()	요약문 번호	
연구참여 구분	일반공동연구원 ()	,	
※일반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	: 갑, 을, 병 등으로 표시		
연	구 업 적 요	약 문	
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			
업적 구분	저서() 역서()	학술지() 외	기국특허()
역 할	연구책임자(), 일반공동연구원	.()
연구 참여자수	1명() 2명() 3	명() 4명()	5명이상()
■ 초록(abstract) 또는 요약			
(특허의 경우 출원일, 출원국기	ㅏ 및 내용 등을 기재)		

- ※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함
- ※ 요약문 번호 명기 방법 (연구업적별 작성)
 - 예) 연구책임자: 책임-1, 책임-2.

일반공동연구자: 갑-1, 갑-2 / 을-1, 을-2 / …

※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

Ⅲ. 대표업적

연구업적요약문			
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 적 제목			
업적 구분	저서() 역서() 학술지() 외국특허()		
연구 참여자수	1명 () 2명 () 3명 () 4명 () 5명이상 ()		
■ 초록(abstract)			
(특허의 경우 출원일	l,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)		

- ※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함 (3편 각각 작성)
- ※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